

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번호	16 - 73
------	---------

제출년월일 : 2016. . . .

제 출 자 :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

1. 개정사유

한시기구로 운영 중인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건립추진단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법령 표기 형식 및 관계 조문 수정을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법령 표기 형식 수정 (안 제7조제2항제10호)
- 나. 관계 조문 수정 (안 제9조)
- 다.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건립추진단 존속기한을 2018년 6월 30일 까지 연장 (부칙)

3. 주요 토의과제

없음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
 - 「지방자치법」 제112조(행정기구와 공무원)
 -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5조(기구의 설치시 고려사항)부터 제8조(한시기구의 설치운영)까지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규제여부 : 제외 법령

마. 기타사항

- 1) 입법예고 : 2016. 8. 4. ~ 8. 10. (제출의견 없음)
- 2) 자치법규 성별영향 분석평가 : 제외 법령
- 3) 자치법규 부패영향 자율평가 : 제외 법령
- 4)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
- 5) 신·구조문 대비표 1부
- 6) 비용추계미첨부사유서 1부

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2항제10호 중 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”을 “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”로 한다.

제9조 중 “「지역보건법」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”를 “「지역보건법」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”로 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한시기구의 존속기한) 제3조의2의 규정에 따른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건립추진단의 존속기한을 2018년 6월 30일까지 연장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7조(도시환경국) ① (생략)</p> <p>② 도시환경국장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~ 9. (생략)</p> <p>10. <u>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각종 인·허가(개발제한 구역은 제외)에 관한 사항</u></p> <p>11. ~ 56. (생략)</p> <p>제9조(설치) 「지방자치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113조와 「지역보건법」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구에 보건소를 설치한다.</p>	<p>제7조(도시환경국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.</p> <p>1. ~ 9. (현행과 같음)</p> <p>10. 「<u>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</u>」----- -----</p> <p>11. ~ 56.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9조(설치) ----- ----- 「<u>지역보건법</u>」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----- --.</p>

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

- 조례 개정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 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12조제2항 제1호 해당
 1.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,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

3. 미첨부 사유

- 조례 개정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 없음

4. 작성자

작성자 이름	안전행정국 총무과 서은영
연락처	02-3153-8216